

大田直轄市郷土史料館設置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110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 1992. 3. 30
提出者 : 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

우리 市 歷史考證 資料와 傳統文化藝術, 民俗遺品 資料를 菲集 展示 管理하고, 所藏品의 保管 陳列 및 修理等의 特殊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鄉土史料館 常任委員의 士氣를 振作시키고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為해 任期를 1년 더 延長하며, 報酬도 우리 市의 市史編纂委員會 常任委員 水準으로 改善하여 鄉土史料館을 效果的으로 管理 運營코자 함.

2. 主要骨子

- 가. 鄉土史料館 常任委員의 任期를 1년에서 2년으로 延長함(案 第6條 第2項)
- 나. 常任委員의 報酬를 우리 市 市史編纂委員會 常任委員水準으로 調整하여 處遇를 改善하려는 것임 (案 第6條 第3項)

3. 參考事項 (別添)

- 가. 現行 常任委員 處遇等 比較表
- 나. 鄉土史料館 常任委員 處遇등 比較表
- 다. 市政 調整委員會 審議 結果

대전직할시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”을 “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 표”

구 분	지 급 기 준
월액수당	4급 10호봉 상당액
기말수당	월액수당의 400%
정근수당	지방공무원 수당규정(정근수당) 준용
직무수당	지방공무원 수당규정(직무수당) 준용
여 비	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금액

신 구 조 문 대 조 표

현 행	개 정
<p>대전직할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</p> <p>제6조(상임위원) ①사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박물관 설치시까지 1인의 상임위원을 두어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</p> <p>② <u>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</u>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상임위원에게는 월409,000원의</u> <u>월액수당과 매분기마다 월액수당의</u> <u>100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</u> <u>한다</u></p>	<p>대전직할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</p> <p>제6조(상임위원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</u></p> <p>.....</p> <p>③ <u>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</u> <u>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등을</u> <u>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신 구 조 문 대 조 표

현 행	개 정												
(신 설)	<p>“별 표”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 분</th><th>지 급 기 준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월액수당</td><td>4급10호봉 상당액</td></tr><tr><td>기말수당</td><td>월액수당의 400%</td></tr><tr><td>정근수당</td><td>지방공무원 수당규정 (정근수당) 준용</td></tr><tr><td>직무수당</td><td>지방공무원 수당규정 (직무수당) 준용</td></tr><tr><td>여 비</td><td>4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한 금액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 분	지 급 기 준	월액수당	4급10호봉 상당액	기말수당	월액수당의 400%	정근수당	지방공무원 수당규정 (정근수당) 준용	직무수당	지방공무원 수당규정 (직무수당) 준용	여 비	4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한 금액
구 분	지 급 기 준												
월액수당	4급10호봉 상당액												
기말수당	월액수당의 400%												
정근수당	지방공무원 수당규정 (정근수당) 준용												
직무수당	지방공무원 수당규정 (직무수당) 준용												
여 비	4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한 금액												

參考事項

○ 現行 常任委員 處遇 等 比較表

區 分	市史編纂常任委員	鄉土史料館常任委員
常任委員數	1人	1人
月額手當	4級7號俸 相當額	409千원
期末手當	月給與의 400%	左同
精勤手當	月給與의 100%	없음
旅 費	4級公務員 相當	없음

○ 鄉土史料館 常任委員 處遇等 比較表

區 分	現 行	改 善
常任委員任期	1年	2年
月額手當	409千원	4級10號俸 相當額
期末手當	月給與의 400%	현행과 같음
精勤手當	新 設	地方公務員 手當規程(精勤手當) 準用
職務手當	新 設	地方公務員 手當規程(職務手當) 準用
旅 費	新 設	4級 地方公務員에 相當한 金額

○ 市政調整委員會 審議結果

1) 會議開催 : '92. 2. 21(金)

2) 審議結果 : 鄉土史料館 常任委員의 任期 및 報酬는 上程案대로

可決하고, 常任委員 名稱은 改正치 않기로 함

(全體 委員 16名中 10名 參席, 參席委員 全員 同意)